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지난호에 이어〉

##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6-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가. 허가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규칙제19조제1항)

-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②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③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⑤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나.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규칙제19조제3항)

-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②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⑤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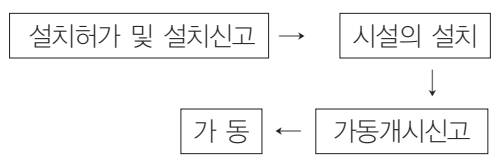
### 6-7.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가.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이상인 지역으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

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 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 6-8.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업무처리요령

가. 허가절차



-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시〉

- 대기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 4·5종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설치가능
- 검토대상관계법규(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공장신설 등이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 건축법 제8조 및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 기타 관계법규

#### 나. 방지사설의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시행령제6조, 방지사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사설의 범위
  -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 방지사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개선하는 경우
  - 시설의 용량이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30/100 이내로 증설·대체·개선하는 경우
- 자가방지사설의 설계·시공시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공정도
  - 원료(연료를 포함)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기술능력을 기재한 서류

#### 다. 방지사설 면제요건 및 구비서류

- 방지사설의 설치면제는 배출시설의 기능 및 특성상 방지사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방지사설 설치면제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에 가능함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 자료

## 7. 가동개시신고

### 7-1. 신고시기

- 가. 가동개시신고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한다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가동개시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
  - 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시설의 합계보다 20/100이상 증설

### 7-2. 신고서 처리

- 가. 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 적·부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 나. 처리기간 : 즉시

### 7-3. 시운전

- 가. 대상시설 : 배연탈황시설 및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나. 시운전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 7-4. 벌칙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8 배출부과금

### 8-1. 제도개요

- 가. 기본부과금은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방지사설의 설치등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의 사용대가 차원에서 부과
- 나.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벌과금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며, 강제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 목적으로 운영



## 8-2. 제도의 연혁

- 가. 1983.9 :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 부과대상항목(4종) :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 나. 1991. 1 :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중별 부과금 신설
  - 부과대상항목 :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 다. 1997. 1 : 기본부과금 제도도입(부과항목 : 먼지, 황산화물)
- 라. 1999. 10 : 중별부과금 폐지
- 마. 2000. 1 : 기본부과금제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바. 2005. 1 : 5종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면제

## 8-3. 초과부과금 제도

- 가. 부과대상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 나. 부과항목 : 먼지 등 10개
- 다. 산정방법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도점검시 위반한 경우

- 오염물질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
  - 배출기간 : 시료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또는 개선명령)이행 완료일
-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5/100, 2차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5/100를 곱한 것으로 한다.

-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단위로 산정(중전 : 2회계년도 기준)

- 바. 부과금 납부통지
  - 부과금 부과시에는 부과대상오염물질 배출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사. 부과금의 징수유예 · 분할 납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한다)

## 8-4. 기본부과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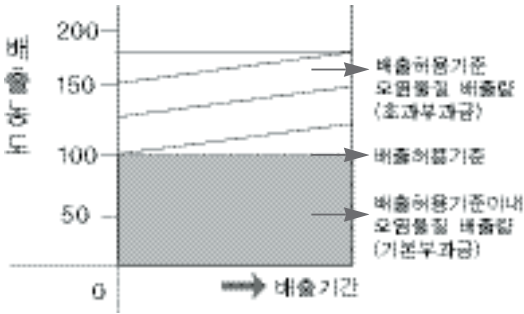
- 가. 배출량 신고
  - 상반기 ·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배출량을 신고
  - 예정배출량 명세서는 기본부과금 시행초기에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확정배출량자료를 그 다음반기 예정배출량자료로 볼 수 있다.

- 나.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kg 또는 톤(Ton)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배출농도(ppm 또는 mg/S m<sup>3</sup>)와 배출가스량(m<sup>3</sup>/시간)을 알아야 한다.
    - 배출농도와 배출가스량은 자가측정한 결과를 이용한다.

- 황산화물의 경우는 황 함유량에 따라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 배출량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이하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별 kg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 산정자수 × 농도별부과계수

다. 배출허용기준이하 오염물질 배출량



라. 오염물질별 kg당 부과금액

항 목	먼 지	황산화물
금 액	770원	500원

마. 연도별부과금 산정자수

- 최초의 부과년도인 '97년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005년도 부과금 산정자수
  - ┐ 기본부과금 : 1.3526
  - └ 초과부과금 : 4.5209

바. 지역별 부과계수

- I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 II 지역 :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
- III 지역 :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1.5	0.5	1.0

사. 농도별 부과계수

- 연료연소시설중 황산화물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황산화물만 해당)

연료의 황함유량	0.5%이하	0.5~1.0%이하	1.0%초과
부과계수	0.2	0.4	1.0

- 먼지 및 황산화물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먼지, 황산화물 해당)

오염물질 배출 농도 백분율(%)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부과계수	0	0.15	0.25	0.35
오염물질 배출 농도 백분율(%)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0.5	0.65	0.8	0.95

아.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 황산화물의 부과면제

㉠ 액체 및 고체연료

- 발전시설 - 액체 및 고체연료 : 황 함유량 0.3%이하
- 발전시설외 - 액체연료 : 황 함유량 0.5% 이하
- └ 고체연료 : 황 함유량 0.45% 이하

※ 열병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면제요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전시설이라 함은 화력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관, 열병합발전시설을 의미하여, 배출허용기준에서도 일반보일러와 발전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열병합발전시설은 발전시설의 범주를 보아 황 함유량 0.3%이하의 액체 연료 및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면제가능
- 다만, 100mw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은 발전시설외의 면제기준에 적용

㉡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황 함유량이 0.05%이하

㉢ 가목 및 나목의 연료를 혼소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 먼지 및 황산화물 부과면제
  - ㉓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 다만, LNG, LPG를 사용하여 직접 가열하는 시설은 연료외의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㉔ 기본부과금은 공정개선, 연료대체, 고효율방지시설의 설치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청정연료 사용시설은 부과면제됨
- 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부과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 의 면제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1인 소유면적 · 지분기준으로 160㎡ 미만인 시설물

※ 배출부과금 비교표

구 분	초과 배출부과금	기본 배출부과금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li> <li>•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허용기준 준수 수단만으로는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흡</li> <li>• 오염원인자 부담원칙</li> </ul>
도 입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3년 최초 도입되어 '91 부과 항목을 확대(4개 → 1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1.1 시행</li> </ul>
대상오염물질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 먼지, SOx, NH<sub>3</sub>, HF, HCl, Cl<sub>2</sub>, H<sub>2</sub>S, HCN, CS<sub>2</sub>, 악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 먼지, 황산화물</li> </ul>
부 과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1종 내지 4종사업장</li> <li>• 4종 : 50% 감면</li> </ul>
배출량 및 금액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에서 측정하여 산정한 금액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지 : 자가측정결과 이용</li> <li>• 황산화물 : 황산화물 배출계수 및 자가측정결과</li> <li>• 행정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자가측정자료와 평균하여 산정</li> </ul>
부 과 면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별 면제</li> <li>• 농도별부과계수에 의한 면제(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li> </ul>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다음호에 계속 ...